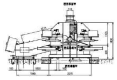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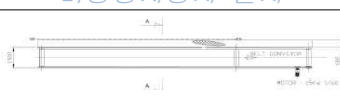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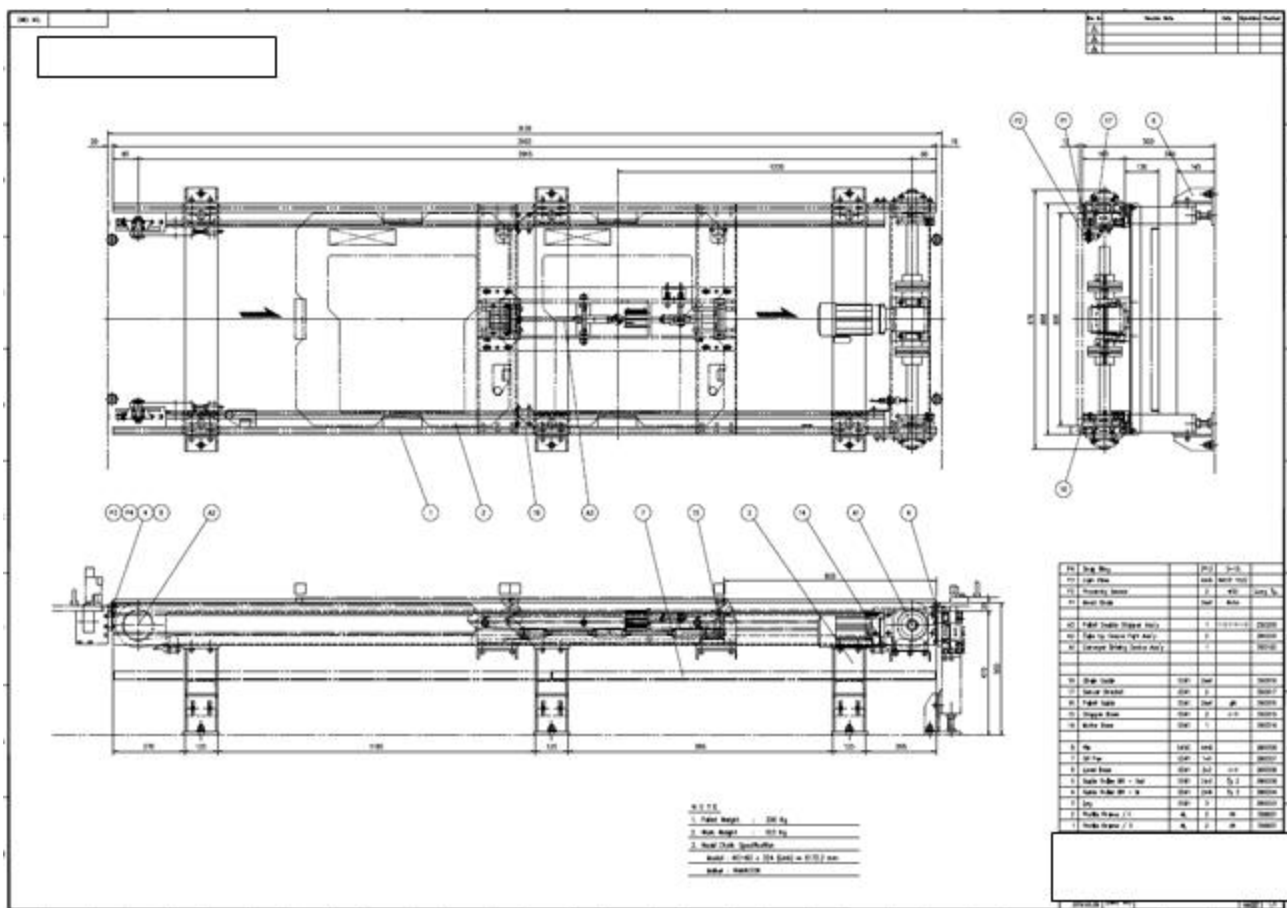
방호장치 설치 내역서

① 번호	② 위험원	③ 위험대책 (제작 및 안전기준)	④ 위험위치	⑤ 관련사진(도면)
1	끼임	끼임 위험 장소에 덮개 설치	메인모터(5HP) 구동부	 컨베이어 메인모터 구동부에 덮개 설치
			기복모터(1HP) 구동부	 컨베이어 기복모터 구동부에 덮개 설치
			회전 말림부 (15EA)	 컨베이어 이송부 회전 말림부 덮개 설치
		끼임 위험 장소에 센서 설치	동력공급부	 인터록 기능 설치로 불시기동 방지
2	추락	파쇄기 투입부 추락 장소에 보호 커버 설치	파쇄기 투입부	 투입부 관련 도면 첨부
3	비상정지	비상 시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 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제어반 판넬	 제어반 판넬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위치 인근	 작업자 인근 비상정지장치 설치 위치 도면 표기
4	...			

- ▶ 덮개, 비상정지장치, 난간, 연동장치, 센서류 등 위험 예방 방호장치는 모두 작성
- ▶ ①②③ 번호, 위험원, 위험대책 : 위험성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 내용 중 방호
장치에 대한 "번호", "구분" 및 "내용"을 각 항
목에 기재
- ▶ ④ 위험위치 : 위험대책이 적용되는 기계·기구의 위치를 세부적으로 전부 기재
- ▶ ⑤ 관련사진(도면) : 작성한 위험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도면을 첨부

(예시)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제2장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절차서

I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제도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등(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는지 여부를 조사(제조 과정 조사)하거나 유해·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성능시험을 하는 제도

II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제101조(성능시험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 ※ 제170조(벌칙)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83조(성능시험 등) ① 법 제101조에 따라 제조 과정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② 법 제101조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위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영 제83조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제110조, 제111조제1항 및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제111조(확인 방법 및 주기 등)
 -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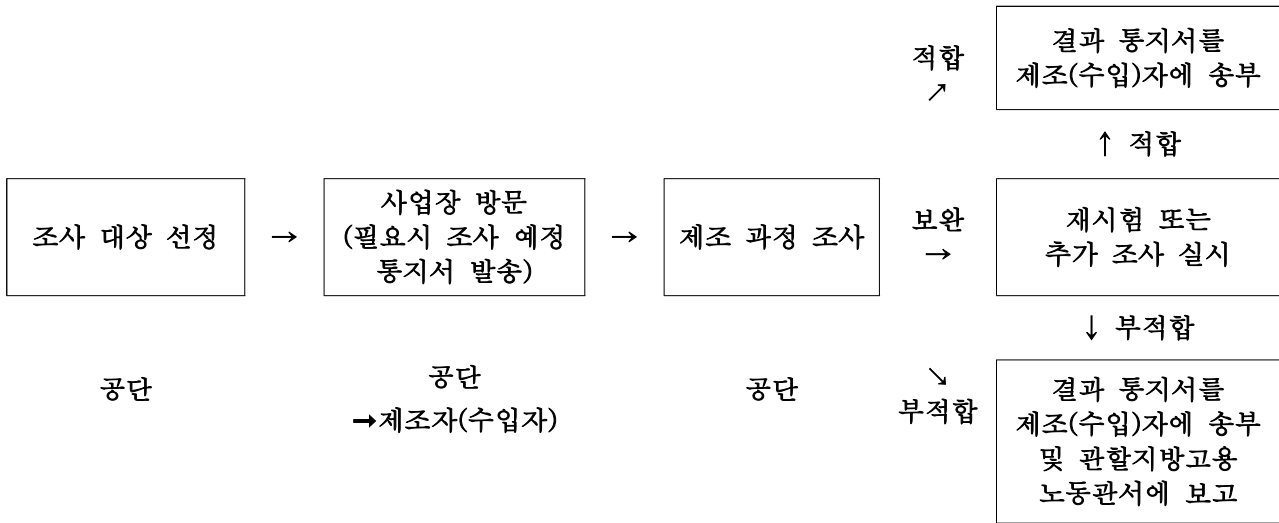
제조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 절차 등

□ (목적) 제작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기계·설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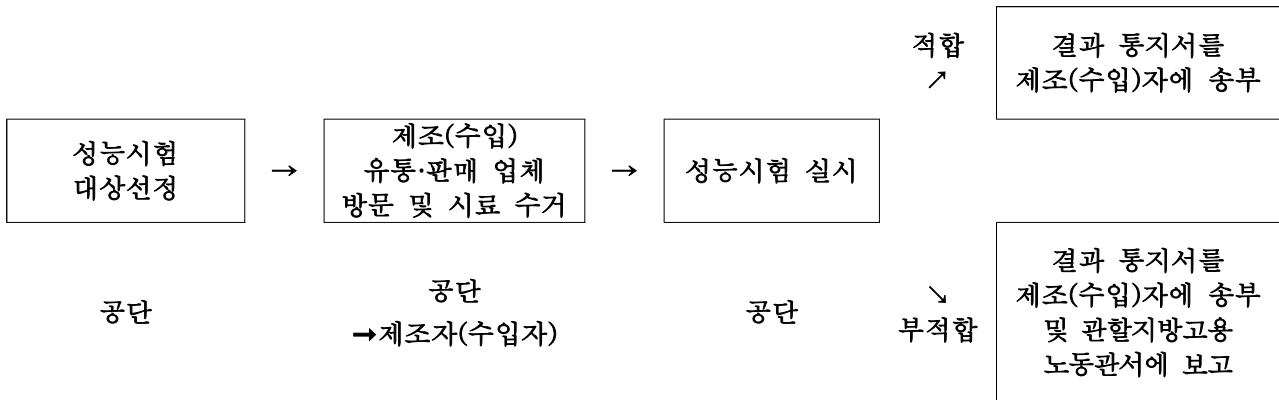
□ (업무 절차)

-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대상 사업장 선정 후 제조 사업장(제조사업장 확인이 불가할 경우 사용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수거 또는 현장에서 제조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 실시

○ 제조과정조사 업무 처리 절차



○ 성능시험 업무 처리 절차



□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대상) 신품 또는 중고품

- ※ 사용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도면 등을 확인하여 성능시험 외에 재료, 치수 등이 신고당시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

□ (성능시험 방법)

- 성능시험 절차서를 참고하여 적합, 부적합 판단
- 재료검사 등 외부기관 시험의뢰가 필요한 경우 수거하여 시험의뢰
- 성능시험은 현장에서 완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료, 시료의 절단, 가공 및 지그·공구 등은 제조사에게 추가로 요청 가능

※ 성능시험 시료 구매는 공단 비용으로 처리

- 성능시험 결과 부적합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관련 사실을 보고

※ 부적합 발생 보고시 해당 제품에 대해서 개선 또는 수거파기 등의 행정명령이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업무처리 필요

IV

제조 과정 조사 결과서(양식)

제 조 과 정 조 사 결 과 서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계·기구명		형 식(규 격)	
조 사 일		조사결과	☐ 적합 ☐ 부적합 ☐ 보완
조 사 원		담 당 자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항 목	제 조 과 정 조 사 내 용	결 과
위험성 평가 결과서	○ 위험성평가 결과서 내용	○ 적합/부적합/보완
사용설명서	○ 제품 사용설명서	○ 적합/부적합/보완
시험성적서	○ 전기안전성/전자파적합성 시험	○ 적합/부적합/보완

☐ 안전인증 대상품

항 목	제 조 과 정 조 사 내 용	결 과
서면자료	○ 서면도서	○ 적합/부적합/보완
제작 및 안전기준	○ 안전인증고시 제작 및 안전기준 사항	○ 적합/부적합/보완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O광역시/지역본부장

V

성능시험 결과서(양식)

성능시험 결과서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수거품명		인증번호	
제조업체명		형식(규격)	
제조연월일		구입일자	
구입금액		구매수량	
수거자			

☐ 성능시험 결과

항목	성능시험내용
시험결과	○ 시험 성적서 참조
주요 시험 항목의 부품 등 변경여부	○ 주요 시험항목의 검토에 따라 변경여부 확인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